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읍·면·동 단위 민방위대 신설〉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5546호)

2025.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문위원 서기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출 자 : 정 부
2. 제출연월일 : 2024. 11. 14.
3. 회부연월일 : 2024. 11. 1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방위대 편성 자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민방위대의 전시·평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역 민방위대의 단위 조직을 통·리에서 통·리 또는 읍·면·동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등).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민방위대의 편성 단위에 읍·면·동 민방위대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9조).

현행	개정안
제19조(편성) ① (생략) ②제1항의 지역 민방위대는 통·리를 단위로 하는 통·리 민방위대와 시·군·구를 단위로 하는 시·군·구 민방위 기술지원대(이하 “민방위기술지원대”라 한다)로 구분한다. ③통·리 민방위대는 해당 통·리에 거주하는 제18조에서 규정한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하며, 민방위기술지원대는 수방·방공·의료·전기·통신·토목·건축·화생방 등의 기술을 가진 민방위 대원 중에서 읍·면·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선발한 사람으로 편성한다.	제19조(편성)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 통·리 민방위대, 읍·면·동을 단위로 하는 읍·면·동 민방위대 및 -----. ③ 제1항에 따른 지역 민방위대는 제2항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편성한다. 다만, 통·리 민방위대와 읍·면·동 민방위대의 경우 통·리 민방위대를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통·리의 민방위 대원 편성 대상자가 부족한 경우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민방위대를 편성할 수 있다. 1. 통·리 민방위대: 해당 통·

현행	개정안
	<u>리에 거주하는 제18조에서 규정한 민방위 대원</u> 2. 읍·면·동 민방위대: 해당 읍·면·동에 거주하는 제18조에서 규정한 민방위 대원 3. 민방위기술지원대: 수방·방공·의료·전기·통신·토목·건축·화생방 등의 기술을 가진 민방위 대원 중에서 읍·면·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선발한 사람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⑤ 통·리 민방위 <u>대원과 민방위 기술지원 대원</u> 및 직장 민방위 대원은 중복하여 편성하지 아니한다.	⑤----- <u>대원, 읍·면·동 민방위 대원, 민방위기술지원 대원</u> ----- -----.
⑥ 통·리 민방위대의 대장은 <u>통장·이장</u> 으로, 민방위기술지원대의 대장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민방위사태 발생 시 통·리 민방위대의 대장이 65세 이상의 고령, 심신허약 등의 사유로 현장 지휘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⑥ ----- <u>통장·이장</u> 으로, 읍·면·동 민방위대의 대장은 읍·면·동 <u>장으로</u> -----. ----- ----- ----- -----

현행	개정안
읍·면·동장이 지정하는 자를 통·리 민방위대의 대장으로 할 수 있다. ⑦ (생략) ⑧ 제6항 및 제7항의 경우에는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u>통장·이장</u>,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직장의 장이나 직장의 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자가 예비군의 대원인 때에도 민방위대의 대장(隊長)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군인 민방위대의 대장에 대하여는 「예비군법」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동원과 훈련 의무를 면제한다. ⑨ ~ ⑪ (생략) 제20조(편성 절차 등) ① ~ ⑤ (생략)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9조제3항에 따라 민방위기술지원대원을 선발하면 지체 없이 읍·면·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알려야 한다. ⑦ (생략)	----- ----- --. ⑦ (현행과 같음) ⑧ ----- ----- ----- <u>통장·이장</u>, <u>읍·면·동장</u>----- ----- ----- -----. ----- ----- ----- --. ⑨ ~ ⑪ (현행과 같음) 제20조(편성 절차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제19조제3항제3호에 따라 민방위기술지원대원----- ----- -----. ⑦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민방위대를 주소지를 단위로 하는 ‘지역 민방위대’와 직장을 단위로 하는 ‘직장 민방위대’로 편성하도록 하면서, 지역 민방위대는 통·리를 단위로 하는 ‘통·리 민방위대’와 시·군·구를 단위로 하는 ‘시·군·구 민방위 기술지원대(이하 민방위 기술지원대라 함)’로 구분하고 있음¹⁾.

2024년 1월 현재 전국적으로 조직되어 활동 중인 민방위대는 총 8만 4,768개이고, 그 중 통·리 민방위대가 7만 6,759개(90.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전국 민방위대 편성 현황(2024. 1. 기준)]

(단위: 개, 명)

구 분	대 수	편성내역		
		계	대장	대원
합 계	84,768	3,285,397	83,559	3,201,838
통·리 민방위대	76,759	2,971,815	75,643	2,896,172
민방위 기술지원대	243	17,620	243	17,377
직장 민방위대	7,766	295,962	7,673	288,289

자료: 행정안전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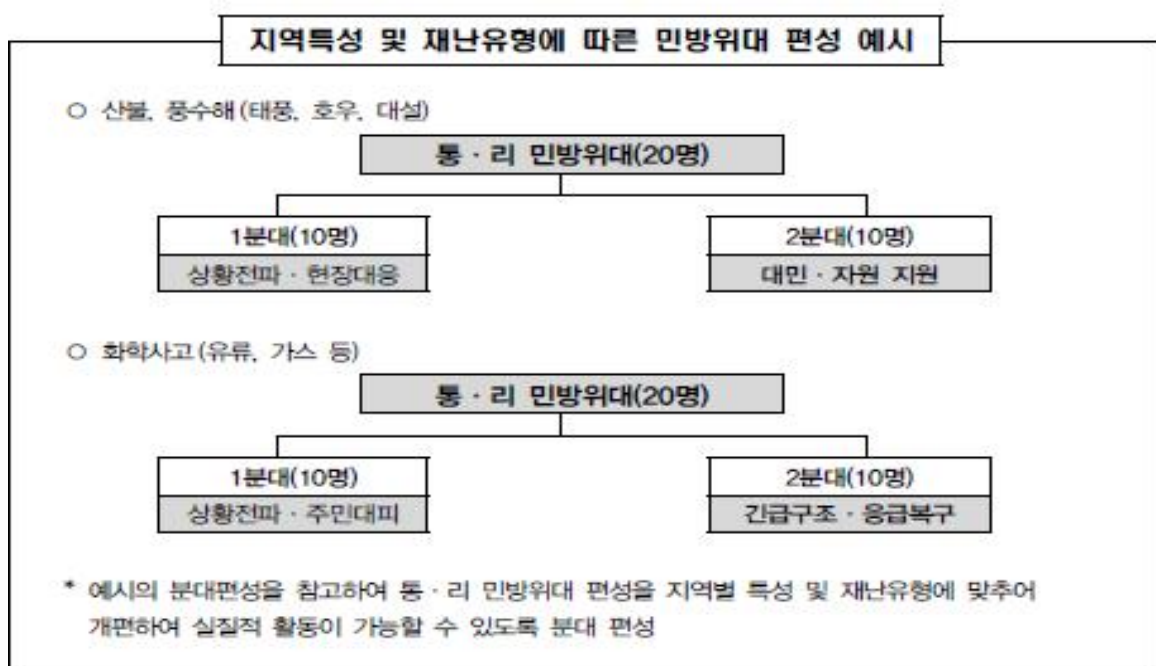
1) 「민방위기본법」 제19조(편성) ① 민방위대는 주소지를 단위로 하는 지역 민방위대와 직장을 단위로 하는 직장 민방위대로 편성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민방위대는 다른 민방위대와 통합하여 편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역 민방위대는 통·리를 단위로 하는 통·리 민방위대와 시·군·구를 단위로 하는 시·군·구 민방위 기술지원대(이하 “민방위기술지원대”라 한다)로 구분한다.

현행법령은 민방위 대원의 수가 20명 미만인 소규모 민방위대는 다른 민방위대와 통합하여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²⁾하고 있고, 이에 따라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작성·보급하는 「민방위 업무지침」은 통·리민방위대를 대원 규모에 따라 분대, 소대, 중대 등으로 편성하되, 1개 통·리 민방위대의 인원을 최소 20명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음.

[통·리 민방위대 규모별·유형별 편성 기준]

대원규모	20~40명 미만	40~80명 미만	80~300명 미만	300~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단위대 조직	분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자료: 행정안전부



자료: 2024년도 민방위 업무 지침

2) 「민방위기본법」 제19조(편성) ① 민방위대는 주소지를 단위로 하는 지역 민방위대와 직장을 단위로 하는 직장 민방위대로 편성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민방위대는 다른 민방위대와 통합하여 편성할 수 있다.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9조(소규모 민방위대의 통합편성) ①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통합하여 편성할 수 있는 소규모 민방위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방위 대원이 20명 미만인 통·리 민방위대
2. 민방위 대원이 20명 미만인 직장 민방위대

그런데 최근 지속적인 농·어촌 인구의 감소로 인한 민방위대 편성자원 부족으로 편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통·리 민방위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전시·평시에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민방위대의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4년에 편성된 7만 6,759개의 통·리 민방위대 중 민방위 대원의 수가 20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편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통·리 민방위대는 2만 5,559개로 약 33.3%에 이르고 있음.

특히, 민방위 대원 편성 기준 미충족률을 보면 경상북도 68.66%, 강원도 64.47% 등 농·어촌지역 비중이 높은 시·도가 도시지역 비중이 높은 시·도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20명 미만 소규모 통·리 민방위대 통합 편성 예시]

(단위: 개)

시·도	시·군·구	통리대수	미충족(20명미만)	비율
총계	229	76,759	25,559	33.30%
서울	25	12,625	1,455	11.52%
부산	16	4,516	1,502	33.26%
대구	9	3,637	968	26.62%
인천	10	4,746	1,100	23.18%
광주	5	2,192	545	24.86%
대전	5	2,335	509	21.80%
울산	5	1,606	424	26.40%
세종	1	403	33	8.19%
경기	31	16,321	3,277	20.08%

강원	18	3,332	2,148	64.47%
충북	11	2,867	1,193	41.61%
충남	15	3,609	2,070	57.36%
전북	14	3,636	2,042	56.16%
전남	22	2,761	1,188	43.03%
경북	22	5,757	3,953	68.66%
경남	18	5,659	2,979	52.64%
제주	2	757	173	22.85%

이와 같이 인원이 부족한 소규모 민방위대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대원의 수가 현행법령 및 「민방위 업무지침」에서 20명 미만인 민방위대를 통합하여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20명 미만인 통·리 민방위대의 다수 발생으로 인하여 실제로는 읍·면·동 단위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는 민방위대가 많은 실정임

[20명 미만 소규모 통·리 민방위대 통합 편성 예시]

- 1개 통·리대가 20명 미만으로 통합 통·리대를 편성하는 경우
 - 28명인 경우, 소대 없이 2개 분대 구성, 1개 분대 14명 편성

○○통·리대	+	○○통·리대	=	통합 ○○통·리대
18명		10명		28명

자료: 2024년도 민방위 업무 지침

이에 개정안은 읍·면·동 단위의 민방위대 조직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민방위대 편성 자원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편성 기준에

맞는(최소 20명 이상) 민방위대를 조직·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방위대의 기능을 유지하고 실질에 맞는 민방위대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생각됨.

참고로 정부는 민방위 단위 조직 신설과 관련하여 정확한 비용추계가 어렵고, 이는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에 관한 사항³⁾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였음.

3)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국회의원·위원회 또는 정부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거나 위원회에서 수정된 의안이 비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7. 24.>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
2.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3.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명 미만 소규모 통·리 민방위대 통합 편성 예시]

(단위 :대, 명)

구분	민방위대		민방위 자원(대장·대원)	
연도	대수	증감	인원	전년 대비 증감
2024	84,768	421	3,285,397	-62,652
2023	84,347	-65	3,348,049	-73,264
2022	84,412	-695	3,421,313	-73,894
2021	85,107	-4,085	3,495,207	-21,695
2020	89,192	3,667	3,515,902	-70,152
2019	85,525	651	3,586,054	-33,570
2018	84,924	-569	3,619,624	-37,116
2017	85,493	-11	3,656,740	-9,505
2016	85,504	402	3,666,245	-33,196
2015	85,102	552	3,699,441	-35,470
2014	84,550	313	3,734,911	-17,490
2013	84,237	66	3,752,401	-37,722
2012	84,171	615	3,790,123	-87,074
2011	83,556	398	3,877,197	-54,538
2010	83,158	-1,090	3,931,735	-58,854
2009	84,248	-994	3,990,589	-101,017
2008	85,242	-2,322	4,091,606	-230,618
2007	87,564	-1,945	4,322,224	-2,017,521
2006	89,509	1,471	6,339,745	-111,278
2005	88,038	-975	6,451,023	14,604
2004	89,013	-836	6,436,419	197,727

문 의 처

02)6788-5349